

영등포구의회  
제20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 
관한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김 용 범 의원 대표발의】



2018. 3 . 2 .

運 營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 
관한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 347호로 2018년 2월 19일 김용범 의원 외  
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 
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 
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  
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“청소년의회교실” 등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.

나.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과 운영계획에 포함될  
내용, 성과 평가 결과의 운영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
(안 제3조).

다. 청소년의회교실 대상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
(안 제4조).

라.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, 우수한 학교

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영등포구의회가 매년 시행에 오던 청소년의회교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청소년의회교실 등에 대하여 정의함.
- 안 제3조에서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·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
- 안 제4에서 청소년의회교실 대상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
- 안 제5조 및 6조에서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자에게 수료증을

수여하고,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표창 할 수 있는 내  
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.

○ 본 조례안은

방침에 따라 추진해오던 청소년의회교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 
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 사업의 계속성과 관리  
운영상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---

---

# 참 고 자 료

## 1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청소년"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및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2. "청소년의회교실"이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운영계획)**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(이하 "운영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
2.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, 추진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
3. 안전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.

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**제4조(선정 및 운영 등)**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.

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과 협의하거나 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,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④ 의장은 청소년의회

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**제5조(수료증)**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**제6조(표창)**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**제7조(홍보)**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,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.

**제8조(협조)**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.

**제9조(시행세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**부칙** 〈제6628호, 2017.9.21〉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